방화범의 검거는 다른 범죄보다 유관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와 공조는 물론 증거 확보에 남다른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방화 사건의 직접 증거를 찾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집요하게 증거 확보의 노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화재의 현장 상황이나 최초 목격자, 발견자만의 진술로 가볍게 방화로 추단하고 조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화재가 실화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며, 방화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해결의 관건인 것이다.

현장 소잔물을 근거로 한 증거 자료의 확보는 정황 증거 하나 하나만으로는 증명력이 약하여 범죄자의 유죄를 단정할 힘은 지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상 사실에 대한 간접 증명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적시 사실이 많을수록 증명의 객관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 여부는 증거 재판 주의, 자유 심증 주의에 따른 결과가 되겠지만 화재의 특성이 증거의 인멸 즉, 제(諸)가연 물질의 물리적 변화뿐이 아닌 화학적 변화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일인 것이므로 현장 상황에 입각한 정황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특정 행위에 근접될 수 있는가를 구증코자 하는 데 초점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화부라고 하는, 방화에 있어서의 점화부는 화재후의 상태가 평면적이지만 발화시는 입체적으로 존재하므로 발화부나 점화부는 어떠한 표현이 되었든지 입체적(3차원)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좌표적으로는 적어도 3개의 방향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장소에 있어서 난로의 위치를 생각하더라도 사무실 중앙에 있다고 했을 때 표현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아서도 사무실 중앙, 위나 아래서 보더라도 중앙이라는 표현은 사무실 중앙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다. 돈은 행복의 충족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함은 행복의 완전무결한 상태,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행복이란 것을 객관적으로 결론하기는 지난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우선 돈이 있으되 건강하고 화목한 생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절대적 평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화재는 원상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방화의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하여 범죄자를 추적할 수 없다면 곤란하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돈도, 건강도, 화목도,…와 같이 방화에 있어서 많은 정황 증거의 확보가 증거 재판 주의에 있어서 자유 심증을 형성하는데 당연한 객관적 요

화재원인 조사실무

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추상적 조건에서는 절대적으로 충분 조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과학적 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에 바탕을 둔 논리적 활동임을 고려할 때 최선의 정황 증거 확보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의 기본 학문인 수학에 있어서도 무한을 무한으로 고집해서는 미분학이 존재할 수 없었듯이 방화에 있어서도 간접 또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모두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방화범을 쫓아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면 그 배경에 도사린 「왜 방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방화의 목적과 동기를 결부시켜 계속된 끈기와 집념을 가져야만 방화범을 검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방화 이야기 끝에 형사 미성년자인 만14세미만의 유·소년들이 장난으로 놓은 불인 농화(弄火)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자.

만14세 미만의 유·소년들이 낸 불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가 뚜렷한 방화가 있고 농화를 빙자한 못된 어른들의 사주로 일으키는 방화가 있기에 부모들의 경각심도 제고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은 고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하고, 과실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처벌적 개념이 아닌 형사 미성년자들의 단순 심리하의 점화 행위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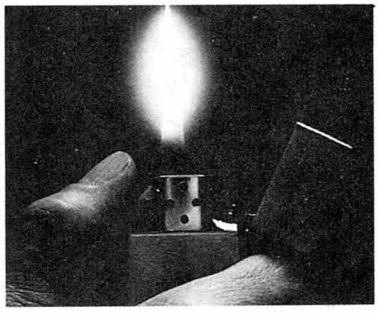

1989년 3월 20일 낮 2시쯤 서울 J동 아파트 505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어른들이 출타한 뒤 이집 아들인 일곱살난 남자 아이가 이웃집의 또래 친구와 같이 불장난을 한 뒤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딴 장난에 빠져 있다가 불이 커져 문으로는 나올 수가 없게 되자 베란다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3일뒤인 23일 오전 10시 20경에는 지방 K읍 소재 농산물 검사소 관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 스레트 건물이 반소되고 방안에 있던 생후 100일된 여아가 변을 당했다. 관사 생활을 하는 검사소 직원 Y씨(28)가 출근 후 부인이 어린 남매만 두고 시장을 보러간 사이 네살난 남자아이가 가스라이타를 갖고 놀다가 이부자리에 불이 붙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다.

같은 날 저녁 7시 10경에는 서울 S동 단층 20평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살과 2살난 남매가 소사하였다. 불은 엄마(31)가 부엌에서 저녁을 하는 사이에 애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서 애들 울음소리에 방으로 뛰어들어 가던 엄마는 불길에 놀라 실신된 채로 구조되고 어린 남매만 그대로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4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서울 K동 단층 25평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아이 1명이 소사하였다. 집주인 내외는 출타하고 할머니와 다섯살난 손자만 있었는데 손자의 또래들이 놀러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마당 수돗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에서 놀던 손자와 애들이 나가는가 했는데 곧 방에서 불길이 솟아 나오더라는 것이며 이미 불길은 잡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건너방 셋집 어린이가 잠자고 있던 중 변을 당했는데 애들 셋이 책상 위에 있던 성냥을 꺼내 이부자리 위에서 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것임이 부모들 입회 조사시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낸 불이 눈에 띄게 빈도가 많아졌다.

방화이건 실화이건 화재는 시기적으로는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방화는 불황시에, 실화는 호경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특징일 수 있는가 하면 화재란 범죄 심리상으로 시의성(時宜性)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렇다고 애들의 불장난까지 이런 범주에 넣기는 좀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정주부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맞벌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관계로 주부들의 외출이나 출타시간이 길어진데에 따른 영향이 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